

##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규대조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회의) ③항 “신설”	제5조(회의)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	부칙 1.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☞ 3주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모니터전까지 개선요구사항에 의거 개정

2024년 1월 17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완료